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53,040,903	34,591,227
일반회계	1,090,199,388	32,705,982
특별회계	62,841,515	1,885,245
공기업특별회계	58,166,064	1,744,98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4,586,116	1,037,583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3,579,948	707,398
기타특별회계	4,675,451	140,264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623,991	78,720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733,043	51,991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18,417	9,553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23년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23년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49,031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5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또는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예산으로 간주처리 할 수 있으며, 간주처리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이 가능하다.